

의안번호	제680호
의결 연월일	2024년 9월 일 (제 회)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24년 9월 2일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680
----------	-----

제안연월일 : 2024년 9월 2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5조 규정에 따라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소멸대응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동 위원회는 충청북도 저출생·고령화 관련 현안에 대한 대응 상황 점검 및 쟁점 논의를 통하여 인구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다. 인구소멸대응 대책 추진 체계가 실효성 있게 구축될 수 있도록 인구정책 추진제도 개선, 인구교육 강화, 인구정책 대응 지역사회 기반 조성, 인구 감소지역 대응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라.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하되, 필요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이유

가. 우리나라 인구는 이미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4년 합계출산율*도 0.72명으로 또 역대 최저를 기록함. 한국의 출산율은 201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에서 더욱 심각한 실정임.

*합계출산율 :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나. 충북은 전체 11개 기초지자체 중 6개(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가 행안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체 인구 또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다. 인구감소는 곧 지역성장 잠재력 저하 및 지역소멸을 초래하므로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막고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점검 및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함.

라. 또한, 각 시·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인구정책 대응과 연계한 다양한 분야(일자리, 경제, 의료, 보육, 주거 등)의 사업이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충청북도가 될 수 있도록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함.

3.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5조, 제38조, 제39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5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히 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9조(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 등) 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③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